

서울특별시 한센병환자 관리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

의안 번호	2686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21년 8월 11일
제출자 : 서울특별시장

1. 제안이유

- 가. 서울시 한센병 환자 관리지원 사업은 「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65조」, 「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」 의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 중인 사업으로서,
- 나. 한센병환자의 조기발견과 치료로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한센사업대상자에 대한 의료 및 복지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자 한센병 관련 전문기관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3 제2항에 의거 서울특별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사업명 : 한센병 관리지원
 - 한센병 관리사업,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
- 위탁기간 : 2022. 1. 1 ~ 2024. 12. 31. (3년)
- 사업비 : 592,983천원/년 (시비100%) ※ 2021년 기준
 - 한센병 관리사업 : 525,460천원
 -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 : 67,523천원
- 선정방법 : 공개 모집
 - ※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3조(협상에 의한 계약) 준용

나. 주요위탁사무 내용

○ 한센병 관리사업

- 한센병의 치료와 관리를 위한 전문 진료소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
- 한센병 환자의 정기 검진과 치료
- 한센병에 대한 예방과 홍보, 이동진료에 관한 사항
- 한센 노령 장애인, 재가 한센인에 대한 신체, 심리 재활 사업
- 한센환자 복지증진을 위한 신규사업 개발 및 추진
- 한센 정착농원 관리

○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 사업

- 한센인의 피해자 진상규명 등 권익보호 활동
- 한센병 발생예방 및 정착농원 이권분쟁 등 분규조정 및 감독
- 한센병 환자들의 간헐적 부랑행위 전면 차단활동
- 서울시 거주 고령, 장애 한센인의 이송·보호 조치
- 한센병에 대한 일반인의 편견해소 등 교육 홍보사업

다.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현황

○ 민간위탁 추진근거

-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65조
-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
-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 4조

○ 민간위탁 추진 현황

- 한센병 관리사업(이동진료, 연구, 사회복귀사업)
 - 1차 : '90. 2. 9. ~ '95. 2. 8.(5년) 수의계약
 - 2차 : '95. 2. 9.~ '00. 2. 8. (5년) 재계약
 - 3차 : '00. 2. 9 ~ '04. 12. 31. (4년) 재계약
 - 4차 ~ 9차 : '05. 1. 1. ~ '21. 12. 31. (3년 단위, 재계약)
- 한센인 권리 및 복지증진사업(선도 및 계몽)
 - 1차 ~ 11차 : '89. 4. 1. ~ '21. 12. 31.(3년 단위, 재계약)

라. 민간위탁(재위탁) 필요성

○ 한센병 관리사업의 목표

- 한센병 환자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치료를 통해 한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
- 한센사업 대상자에 대한 투약치료, 재발관리, 장애예방, 재활치료, 생계지원 등 의료 및 복지지원을 통해 건전한 사회 복귀 도모

○ 한센사업의 목표 및 사업대상자의 특성을 고려, 한센병 관련 전문성을 지닌 민간기관의 인·물적 인프라를 활용한 효과적인 사업 추진 필요

○ 이에 현재의 민간위탁 협약 기간 만료일('21.12.31.)도래에 따른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(재위탁)적격자 공개모집 및 선정을 하고자 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

○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, 제65조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.

13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

제65조(시·도가 부담할 경비) 1. 한센병의 예방 및 진료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한 지원경비의 일부

○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

제4조(민간위탁 사무의 기준) ① 시장은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시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시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○ 서울특별시 한센병 관리사업 위탁에 관한 조례

제2조(위탁사업) ① 이 조례에 따라 서울특별시장(이하 시장)이 위탁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한센병의 예방 및 치료사업(이동진료사업 포함)
2. 한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사업
3. 한센병의 조사·연구사업
4. 한센병치유자의 사회복귀 및 재활사업
5. 한센병환자의 입원치료사업
6. 한센병 치료 전문 진료소 설치·운영
7. 환자의 조기발견을 위한 피부과 질환자의 검진 및 치료사업
8. 한센병 등록자에 대한 진료참여 지원 사업
9. 한센병환자의 생활안정을 위한 사업
10. 한센병환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업
11. 그 밖에 한센병 관리에 관하여 시장이 승인 또는 요청하는 사업

제3조(사업의 위탁) ① 시장은 제2조에 따라 사업을 수탁단체에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. ② 시장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위탁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타사항

- 한센병관리사업 민간위탁(재위탁) 추진계획수립('21.6.)
- 민간위탁 운영평가 위원회 심의('21.7.)

※ 작성자 :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김수진 (☎2133-7663)